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78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김용만 · 허성무 · 윤후덕
양부남 · 박민규 · 한민수
진선미 · 김남근 · 이훈기
조승래 · 권향엽 · 최혁진
이강일 · 김태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교육 체제에서의 ‘이탈’이나 ‘부재’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소외감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너머’는 그 경계를 지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학교라는 경계를 지나 새로운 성장 경로에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 수정을 통해 이들을 성장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사회적 포용력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고용하는 전문인력은 단기 계약직 형태의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청소년들과의 신뢰 관계 형성이 지속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고용 비용 지원을 명문화하고, 전문인력 보수의 수준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인력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함. 이를 통해 ‘학교 너머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조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및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로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보수가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부문 전문인력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16조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제19조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④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의2.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

제56조제1항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

제57조제3항제2호의2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⑥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⑦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2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⑧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0호 및 제22조제2항제6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

⑨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이하 “학교 너머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 전단 중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u>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u> 을 규정함으로써 <u>학교 밖 청소년</u> 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학교 밖 청소년</u>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u>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u> ”이란 <u>학교 밖 청소년</u> 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무) ① -----
학교 너머 청소년-----
-----학교
너머 청소년-----

-----.

② -----학
교 너머 청소년-----

-----.

③ -----학
교 너머 청소년-----
-----.

④ -----

-----학교
너머 청소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너머 청소년-----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생략)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제5조(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계획) ① -----

-----.

1. 학교 너머 청소년-----

 2. 학교 너머 청소년-----

 3. 학교 너머 청소년-----

 4. 학교 너머 청소년-----

 5. (현행과 같음)
 6. 학교 너머 청소년-----

 7. -----학교 너머 청소년-----

- ② 학교 너머 청소년-----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① -----
-----학교 너머 청소년-----
-----학교 너머 청소년-----

-----학교 너머 청소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너머 청소년-----

-----학교 너머 청소년-----

-----.

1. 학교 너머 청소년-----

2. 학교 너머 청소년-----

3. 학교 너머 청소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학교 밖 청소년</u>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 밖 청소년</u> 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상담지원) ① -----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u>학교 밖 청소년</u> 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학교 밖 청소년</u> 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교 밖 청소년</u> 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

-----.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 너머 청소년-----

② -----학교 너머 청소년-----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자립지원) ① -----

-----학교 너머 청소년-----

-----.

② -----

-----학교 너머 청소년-----

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

-----.

③ -----
-----학교
너머 청소년-----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
-----학교 너머 청소년-----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 ① -----학
교 너머 청소년-----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

-----.

1. · 2. (현행과 같음)

3. 학교 너머 청소년-----

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신 설>

② -----
-----.

1. -----학
교 너머 청소년-----

2. 학교 너머 청소년-----

3. 학교 너머 청소년-----

4. 학교 너머 청소년-----

5. 학교 너머 청소년-----

6. 학교 너머 청소년-----

7. -----학교 너머 청소년--

③ -----학교 너머 청
소년-----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보수가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⑤ (생략)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u>학교 밖 청소년</u>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u>학교 밖 청소년</u>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u>학교 밖 청소년</u>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u>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부문 전문인력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⑤ -----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및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와의 연계) -----<u>학교</u> <u>너머 청소년</u>----- ----- ----- ----- -----. 제15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 ----- ----- ----- -----<u>학교</u> <u>너머</u> <u>청소년</u>----- -----<u>학교</u> <u>너머</u> <u>청소년</u>----- -----.
--	--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② -----

학교 너머 청소년

학교 너머 청소년

-----.

[illegible]

1. 학교 너머 청소년-----

2. <u>학교 밖 청소년</u> 의 생년월일	2. <u>학교 너머 청소년</u> ----- -
3. <u>학교 밖 청소년</u> 의 성별	3. <u>학교 너머 청소년</u> -----
4. <u>학교 밖 청소년</u> 의 주소	4. <u>학교 너머 청소년</u> -----
5. <u>학교 밖 청소년</u> 의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5. <u>학교 너머 청소년</u> ----- -----
6. <u>학교 밖 청소년</u> 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6. <u>학교 너머 청소년</u>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학교 밖 청소년</u>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 ----- <u>학교 너머 청소년</u> ----- ----- ----- -----.
제16조(비밀유지 의무) <u>학교 밖 청소년</u>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u>학교 너머 청소년</u> ----- ----- ----- ----- -----.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 -- <u>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u> - -----

하지 못한다.

-----.